



**투자설명서 변경**

(1) 기재 정정 사유

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3. FATCA 관련 유의사항 문구 추가

변경내용	변경 전	변경 후
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	-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-제2부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-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환매수수료: <u>종류A, 종류S - 30일 미만 이익금의 70%,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 <u>종류A, 종류S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-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 >	<환매수수료: <b>없음</b> 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변경 대상 항목> - 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변경 대상 항목> (신설)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 등
3. FATCA 관련 유의사항 문구 추가	<변경 대상 항목> 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 <신설> 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<신설>	<변경 대상 항목> 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 12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이 미국인 경우 (또는 1인 이상의 미국(법)인이 1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)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-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13. 이 투자신탁은 <b>(중간 생략)</b> 의미합니다.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. <b>(이후 생략)</b> 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<b>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(FATCA) 및 미국납세의무자 (US Taxpayers)</b>

**간이투자설명서 변경**

(1) 기재 정정 사유

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
2. FATCA 관련 유의사항 문구 추가

변경내용	변경 전	변경 후
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	-II. 매입, 환매관련 정보 1. 수수료 및 보수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환매수수료: <u>종류A, 종류S - 30일 미만 이익금의 70%,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 <u>종류A, 종류S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-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 >	<환매수수료: <b>없음</b> >
2. FATCA 관련 유의 사항 문구 추가	<변경 대상 항목> 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 <b>&lt;신설&gt;</b>	<변경 대상 항목> 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 12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 (또는 1인 이상의 미국(법)인이 1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)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-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13. 이 투자신탁은 <b>(중간 생략)</b> 의미합니다.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. <b>(이후 생략)</b>

### 집합투자규약 변경

#### (1) 기재 정정 사유

#### 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

변경내용	변경 전	변경 후
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	제41조(환매수수료)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~생략~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<u>종류A, 종류S : 30일 미만 이익금의 70%,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 2. <u>종류A, 종류S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: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 ③(생략)	제41조(환매수수료) <b>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b>